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7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,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, 단체 등에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·표시·홍보에 관한 규정(안 제9조)

○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,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,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,「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23,000천원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15. 5. 28. ~ 2015. 6. 17.(의견없음)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없음

4) 보조금심의위원회 : 원안 가결(2015. 6. 12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,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임산부 주차구역) ① 군수는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 청사 및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주차장 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, 병원,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 이용 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.

제10조(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 지원)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,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,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인구의 날 행사
2. 출산장려 관련 행사 지원
3. 다문화가정 출산지원
4.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행사 지원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·교부·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9조(임산부 주차구역) ① 군수는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청사 및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. ②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주차장 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. ③ 군수는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, 병원, 은행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 이용 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.
제9조 (생 략)	제11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
<신 설>	제10조(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 지원)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,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,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인구의 날 행사 2. 출산장려 관련 행사 지원 3. 다문화가정 출산 지원 4.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행사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・교부・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제10조 (생 략)	제12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